

『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김근한, 김영길, 김정도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
이정희, 정지원, 허민근 의원 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시행 '22. 1. 13.)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등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규칙 제정 목적 및 정의·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제1장)
-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(제2장)
-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(제3장)
-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(제4장)
-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(제5장)
- 공무원 교육, 행동강령책임관에 관한 사항(제6장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- 본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) 개정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등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,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과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등 상위법 근거에 위배되거나 상충된 조항은 없으며,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 등을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